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04

발의연월일: 2021. 9. 29.

발 의 자: 박주민·강민정·권칠승

류호정 · 송재호 · 신정훈

유정주 • 이원택 • 임호선

정태호 · 주철현 · 한준호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선 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 임.

주요내용

-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 58조 및 제108조의3).
-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및 제251조 삭제).
-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155조, 제176조,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및 제218조의24).
- 마.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 1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위를"을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책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제82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108조의3을 삭제한다.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를 "오후 9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오후 6시에"를 "오후 9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176조제4항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를 "오후 9시 후에"로 한다.

제218조의16제2항 중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218조의17제7항 본문 중 "오후 5시에"를 "오후 9시에"로 한다.

제218조의24제2항 중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를 "오후 9시 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후 6시까지"를 "오후 9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오후 6시 이후에"를 "오후 9시 이후에"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投票를 하게 하거나"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거목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58條(定義 등) ① 이 法에서 第58條(定義 등) ① -----"選擧運動"이라 함은 당선되거 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하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정책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 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생 략) 선거운동)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 <삭 제>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 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삭 제>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 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 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 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 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 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③ ~ ⑦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

<u>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u> 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 니된다.
-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 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 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 여야 한다.
- ①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 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 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삭 제>

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 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 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 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 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

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 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 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 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삭 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 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 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 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 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 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

<u>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u>	
第155條(投票時間) ① 投票所는	第155條(投票時間) ①
選擧日 오전 6시에 열고 <u>오후</u>	<u>오후 9</u>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	<u>시에</u>
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	
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擧人	
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	
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②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u>오후</u>	<u>\$</u>
<u>6시에</u> 닫는다. 이 경우 第1項	<u>후 9시에</u>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	5
투표는 選擧日 오후 6시(보궐	<u>오후</u> 9시까지
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u> </u>	<u></u>
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
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③	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4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	
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⑤ (생략)

-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 법) ① (생 략)
 -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u>오후 6</u> 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 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 ③ ④ (생 략)
-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운영) ① ~ ⑥ (생 략)
 - ⑦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8·9 (생 략)
-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생 략)

오후 9시 후에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
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文</u> 亭 9
<u>시까지</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오후 9시에</u> -
® ⋅ ⑨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 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 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 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 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 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 거일 <u>오후 6시 이후에</u> 개표참 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 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

<i></i>	<u>오후</u>	9시
후에		
3		
		<u>文</u>
후 9시까지		
4		
<u>오후 9</u> 시 이후	<u>에</u>	

한다.

- ⑤ ⑥ (생략)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 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 的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 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 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 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 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 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 ⑤·⑥ (현행과 같음) 세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
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金錢· 物品・車馬・饗應 ユ 밖에 財産 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 7. (생 략)

② ~ ⑧ (생 략)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 | 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 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 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 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 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眞實 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 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하. (생 략)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너. (생 략)

- 2. ~ 4. (생략)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⑤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 10. (생략)
-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 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 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11. · 12. (생 략)

(3)
1
가. ~ 하. (현행과 같음)
<u><</u> 삭 제>

너. (현행과 같음)

- 2. ~ 4.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b)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1. • 12.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3의3. (생략)
- 4.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 5. (생략)

- ④·⑤ (생 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2. (생략)
-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 <삭 제>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 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 4. (생략)
- ⑦ ~ ⑫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3) -----

1. ~ 3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4의2. • 5.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음)